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전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) 및 동법 시행령(전부개정 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,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타 조례를 부칙조항의 “다른 조례의 개정” 방식으로 일괄 개정함 (부칙)

3. 제정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5.11 법률 제8423호)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

4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조례안 : 따로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생략(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 11. 15)

다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”로 하고, 제2조중 “법 제13조의3”을 “법 제1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”로 하고, 제2조중 “법 제13조의4”를 “법 제16조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1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12조 내지 제120조”로 하고, 제9조중 “법 제104조제1항과”를 “법 제113조와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“이라 한다) 제15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“이라 한다) 제35조”로 하고, 제2조제2호중 “영 제15조”를 “영 제33조”로 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, 제130조 및 제13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 및 제144조”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로 하고, 별표 위임사무의 행정관리국(총무과)의 근거법령란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”으로, “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3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”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(16)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의 수)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의 50분의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의 수) 법 제15조 ----- ----- ----- -----</p>